

Original Article

## 국민인식을 기초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주철<sup>1</sup>, 황병천<sup>2</sup>, 황만기<sup>2</sup>, 이승민<sup>3</sup>, 이은희<sup>4</sup>, 임정태<sup>5\*</sup>

<sup>1</sup>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sup>2</sup>대한한의사협회, <sup>3</sup>버지니아 통합한의대학원, <sup>4</sup>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sup>5</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Should Korean Medicine doctors use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Survey result of public perspectives

Juchul Kim<sup>1</sup>, Byoungcheun Hwang<sup>2</sup>, Manki Hwang<sup>2</sup>, Seungmin Kathy Lee<sup>3</sup>, EunHee Yi<sup>4</sup>, Jungtae Leem<sup>5\*</sup>

<sup>1</sup>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Policy,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sup>2</sup>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sup>3</sup>Virginia University of Integrative Medicine, Fairfax, VA, USA

<sup>4</sup>KM Policy Te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up>5</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public opinion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Methods:** A questionnaire looking into perceptions on the use of modern medical devices was developed. It was distributed by a third party and data was collected.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analysis ( $\chi^2$ -test), frequency and cross analysis using R program. The measurement variable in the study was the respondent's perspectives and expectations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The maximum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There were a total of 3,000 responses and 80.8%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level discussion on endowing rights to Korean Medicine doctors as supervisors for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Also, 83.3% of the respondents agreed the use of ultrasound imaging equipment in Korean Medicine clinics should be legalized.

**Conclusions:** According to this study, respondents strongly support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public opinion in this area and it provides a significant insight into the public needs and desires for a wider scope of practice for Korean Medicine in the healthcare system.

**Key Words** : Scope of practice, Korean Medicine doctor, Medical device legislation, Public opinion, Survey

### 서론

우리나라는 1951년 「국민의료법」을 제정한 이래로 지금의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의료체계가 이원

화되어 있다<sup>1)</sup>.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인 간 업무구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명확한 개념 규정이 부재하여<sup>2)</sup> 의학 또는 한의학이 특정질환이나 치료방법에 대해 그 학문적 원리가 서로 충돌되는

· Received : 28 June 2022      · Accepted : 12 July 2022

· Correspondence to : Jungtae Leem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si, Jeollabuk-do, 54538, Republic of Korea

E-mail : julcho@naver.com

경우가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sup>3)</sup>.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각각의 업무범위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중첩되고 있는 것도 갈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sup>4)</sup>.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2003년 「한약약육성법」이 제정되어 사실상 의료법 외 법률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면서였다<sup>5)</sup> 특히 2011년 「한약약육성법」한약에 대한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한방의료)’로 개정된 이후 의료기기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고, 의료행위를 영역별로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소판소와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sup>6)</sup> 현재까지 적극적인 법제도적 개정 없이 판례와 유권해석만으로 조치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sup>6)</sup>.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규제 기요된 과제로 추진될 정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우리나라 의료법하 규제와 법률 등에서 주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였다<sup>7)</sup>.

한 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한방의료행위를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193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551·561 병합 결정). 법원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623, 2012. 2. 23. 선고 결정에서도 한의사의 면허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해석만으로 한의사를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법률규정이 아닌 법률의 해석으로써 구성요건을 창설하여 한의사를 처벌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하여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551·561 병합 결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의료행위를 결정하는 법리적 판단 근거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사회적 통념은 대중의 의견 또는 여론, 대다수의 정신으로 그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지식이나 사고방식, 관습, 관행 등이라 할 수 있고<sup>8)</sup>, 신화, 가치, 신념 등과 같이 한 문화가 그것이 갖는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다<sup>9)</sup>. 이처럼 한 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법리적 판단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통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관련 법규에 대한 고찰이나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sup>(10-14)</sup>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고자 사회통념 주제인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법, 규제, 정책 전문가들에게 한의사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방향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조사내용

조사항목의 중립성 확보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한 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였으며, 한의예과 교수 1인과 보건행정학과 교수 1인의 감수를 받아 최종 완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 한의의료기관 이용 현황 4문항,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13문항, 바람직한 한의사의 역할과 위상 2문항으로 총 19문항을 객관식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였으며, 연구 수행 및 분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Table 1).

## 2. 연구 대상

모집단은 리얼미터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패널 46,2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총 3,000명을 선정하였다. 자발적 참여의지가 있는 패널들에 한해 연구 참여권이 부여되었으며, 2022년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온라인(50%)과 전화면접(50%)으로 진행되었다.

## 3.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한의사의 현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한의의료기관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동의정도와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 4. 윤리적 검토

본 연구의 조사대상, 항목은 원광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WKIRb-202203-SB-018).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

구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통계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참여 권리를 보호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 1)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남성 52.3%, 여성 47.7%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60대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21.7%)로 나타났다(Table 2).

#### 2) 한의의료기관 이용 특성

연구 참여자 중 54.1%는 최근 1년 이내에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이유로는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4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병 및 예방관리’(24.8%),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10.4%)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한의학의 질병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64.3%가 ‘약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의료기관은 의과(31.9%)가 한의과(23.1%)보다 많았다(Table 3).

Table 1. Survey Items

Item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Area of Residence
Prior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Use among Participants Visit to a Korean Medicine clinic or hospital in the previous twelve months, Purpose of visiting a Korean Medicine clinic or hospital, Preferred method of treatment, Level of trust in the efficacy of Korean Medicine
People's Perspectives and Expectations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Expected outcomes from use, The need to legislate its use opinion on its use, General opinion on its use, Desired scope of practice and treatment from Korean Medicine doctors

## 2.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 1) 국민들의 기대효과와 법제화 요구도, 바라는 진료범위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

의 기대효과와 법제화 요구도, 희망하는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한의사가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의진료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위해 추가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과를 방문하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00)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1,569(52.3)
	Female	1,431(47.7)
Age(years)	20-29	565(18.8)
	30-39	529(17.6)
	40-49	651(21.7)
	50-59	537(17.9)
	more than 60	718(23.9)
	Area of Residence	Seoul
Gyeonggi·Incheon		866(28.9)
Daejeon·Chungcheong·Sejong		376(12.5)
Gangwon		97(3.2)
Busan·Ulsan·Gyeongnam		466(15.5)
Daegu·Gyeongbuk		298(9.9)
Gwangju·Jeolla		302(10.1)
Jeju		53(1.8)

**Table 3.** Prior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Use among Participants (N=3,000)

Classification		N(%)
Visited a Korean Medicine clinic or hospital in the past twelve months	Yes	1,623(54.1)
	No	1,377(45.9)
Purpose of visiting a Korean Medicine clinic or hospital	Internal medicine diseases	307(10.2)
	Musculoskeletal disease	1,420(47.3)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maintenance	744(24.8)
	Pain caused by motor vehicle accidents	313(10.4)
	Other reasons	216(7.2)
Preferred clinic or hospital visit	Korean Medicine clinic or hospital	694(23.1)
	Conventional medicine clinic or hospital	957(31.9)
	Depends on main medical problem	1,091(36.4)
	Undecided	258(8.6)
Level of trust in the efficacy of Korean Medicine	High level of trust	530(17.7)
	Slight level of trust	1,928(64.3)
	Slight level of distrust	387(12.9)
	Strong level of distrust	67(2.2)
	Undecided	88(2.9)

지 않아도 돼 의료비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약간 공감한다’(49.7%), ‘매우 공감한다’(2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진단검사를 위해 추가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과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에 대해서는 49.9%는 ‘약간 공감한다’ 하였으며, 29.8%는 ‘매우 공감한다’고 하였다.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하게 되면 연구 참여자의 과반 이상인 52.7%는 환자의 만족도가 ‘약간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27.9%는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서 의사와 치과 의사 혹은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만을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한의사도 X-ray 등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하는데 있어 54.0%가 ‘찬성’하였으며, 26.8%는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한의사가 진료에도 활용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56.9%가 ‘찬성’하였으며, 26.4%는 ‘매우 찬성’하였다.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해서는 55.2%가 ‘현대과학에 기반한 필수적 현대 진단의료기기(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를 활용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6.4%는 ‘진료에 모든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여성보다는 남성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연령대 별로는 40~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한의의료기관 이용경험에 따른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동의여부

최근 1년 내 한의의료기관의 이용경험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 $p < 0.05$ )으로 나타났다(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3,000명으로 남성 52.3%, 여성 47.7%였으며, 60대 이상이 23.9%로 가장 많았다. 참여자의 54.1%는 1년 이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한의의료기관의 주된 방문목적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47.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발표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 국민이 한의 의료를 이용하는 치료질환으로 근골격계통 비중이 높다는 결과<sup>15)</sup>와 유사하다. 평소 한의학의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해 82.0%(매우신뢰 or 약간신뢰)가 신뢰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을 알 수 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에 따른 기대 효과(매우공감 or 약간공감)로는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80.6%)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과를 방문해야 하는 중복방문에 따른 불편해소와 시간 절약(79.7%), 의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의료비 부담이 절감(75.0%)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나 의과에서의 진단검사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보다는 상세한 진단으로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 만족도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느낌이나 태도로<sup>16)</sup> 의료서비스 결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측정 도구이다<sup>17)</sup>.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목적이 질병 치료가 본질임을 고려할 때,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더 높이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명제로 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하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 Participant Perspectives and Expectations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N=3,000)

Classification		N(%)	
Expected outcomes from use	Usag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will reduce medical costs	Strongly agree	760(25.3)
		Slightly agree	1,490(49.7)
		Slightly disagree	498(16.6)
		Strongly disagree	125(4.2)
		Undecided	127(4.2)
	Usag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will reduce unnecessary procedures and save time	Strongly agree	893(29.8)
		Slightly agree	1,497(49.9)
		Slightly disagree	440(14.7)
		Strongly disagree	123(4.1)
		Undecided	47(1.6)
	Usag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will lead to an increase in treatment satisfaction	Strongly agree	838(27.9)
		Slightly agree	1,580(52.7)
		Slightly disagree	407(13.6)
		Strongly disagree	93(3.1)
		Undecided	82(2.7)
Need to legislate its use	Korean Medicine doctors can be maderesponsible for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such as X-rays	Strongly agree	805(26.8)
		Agree	1,621(54.0)
		Disagree	312(10.4)
		Strongly disagree	107(3.6)
		Undecided	155(5.2)
	Korean Medicine doctors can use ultrasound imaging equipment for treatment	Strongly agree	793(26.4)
		Agree	1,707(56.9)
		Disagree	294(9.8)
		Strongly disagree	102(3.4)
		Undecided	104(3.5)
Korean Medicine doctors can use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Strongly agree	862(28.7)	
	Agree	1,683(56.1)	
	Disagree	283(9.4)	
	Strongly disagree	122(4.1)	
	Undecided	50(1.7)	
Desired cope of practice and treatment Korean Medicine doctors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must be limited to those included in classical Korean Medicine books such as Donguibogam	253(8.4)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must be based oninterpretations of the basic principles in Korean Medicine such as Yin-Yang and Five Elements	524(17.5)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can be extended to include the use of essential diagnostic medical devices based on modern science	1,655(55.2)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can include use of all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491(16.4)	
	Not sure	77(2.6)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 혹은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만을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보다 상세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의사도 X-ray 등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의 80.8%(매우 찬성 or 찬성)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83.3%(매우 찬성 or 찬성)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환자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정당(正當)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참여자의 55.2%는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해 ‘현대과학에 기반한 필수적 현대 진단의료기기(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활용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6.4%는 ‘진료에 모든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은 한의의료행위가 음양오행 등 고전 한의학 원리로만 해석 가능한 진료를 넘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필수적인 현대의학적 진료까지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합의와 수용의 관점에서 국회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권한

**Table 5.** Level of Agreement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Based on Different Participant Characteristics(N=2,950) Classification	Level of agreement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Total	P-value
	High (Strongly agree+Agree)	Low (Strongly disagree+Disagree)		
Gender				
Male	1,349(87.1)	199(12.9)	1,548(100.0)	
Female	1,196(85.3)	206(14.7)	1,402(100.0)	
Age				<0.001*
20-39	904(84.5)	166(15.0)	1,070(100.0)	
40-59	1,024(87.4)	147(12.6)	1,171(100.0)	
more than 60	617(87.0)	92(13.0)	709(100.0)	
Total	2,545(86.3)	405(13.7)	2,950(1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 .05. Result of chi-square test, Data are presented with frequency(ratio)

**Table 6.** Cross Analysis whether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can be Used by Korean Medicine Doctors Based on Prior Visit to a Korean Medicine Clinic or Hospital (N=2,950)

Variables		Level of Agreement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Total	P-value
		High (Strongly agree+Agree)	Low (Strongly disagree+Disagree)		
Visited a Korean Medicine clinic or hospital in the past	Yes	1,425 (89.3)	171 (10.7)	1,596 (100.0)	<0.001*
	No	1,120 (82.7)	234 (17.3)	1,354 (100.0)	
	Total	2,545 (86.3)	405 (13.7)	2,950 (1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 .05. Result of chi-square test, Data are presented with frequency(ratio)

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 동기(動機)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정당을 막론하고 한의사에게 최소한 X-ray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 2017년 9월 6일 김명연 의원 등 14인이 한방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의안 2009127호, 2017.9.6.). 연이어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의안 제2009201호, 2017.9.8.). 이후 2020년 12월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서영석 의원이 35인과 함께 발의하였다(의안 제2106161호, 2020.12.7.). 그러나 대한한의학협회와 의료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입법 제정이 미뤄지는 시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방조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 사회가 공정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비율은 2015년 65.7%<sup>18)</sup>, 2017년 75.8%<sup>19)</sup>, 2022년 84.8%<sup>20)</sup>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 국민여론이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3,000명 대상 대규모 조사인 본 연구에서의 84.8% 높은 비율은 평균 찬성 비율인 75.4%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최근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이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동의여부는 한의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동의하였으며, 특히 40~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의의료 이용경험이 20~30대 보다는 40대 이상이 더 높다는 결과와 동일하다<sup>15)</sup>.

시대적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으로서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 오류를 범하고 있다. Shin(2016)은 사회적 통념이 추상적이고 특정할 수 없는 개념이어서 법령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판결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사회통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법원으로 첫째, 법에 규정이 없거나 둘째, 법에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셋째, 법의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넷째, 법적 책임을 묻기에 부당한 경우에 법원은 사회통념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법적 판단을 한다고 하였다<sup>21)</sup>. 우리나라 현행법상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구분 개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판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통념은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 건강권 보장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회통념의 빠른 변화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해 실제 판결과는 괴리가 있다. 국민여론이 사회통념 전체를 대변(代辯)할 수는 없으나 사회 통념이 계속적으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의 모순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자격정지 혹은 면허취소라는 행정적 처분이 적법한 결정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판례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게 되는 주된 쟁점은 학문의 기초원리, 교육과정 및 전문성, 위험성이다<sup>22)</sup>.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전체 국가고시 문항 수 대비 한의과학 원리를 이용한 문항 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직간접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문항 수 비율은 2018년 36.1%, 2019년 38.5%, 2020년 46.8%로 2020년은 전체 국가고시



문항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sup>23)</sup>. 국가고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한의사 국가고시는 국내 한의과대학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에서 졸업한 자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로서 기본 의학지식을 갖추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가늠하는 첫 관문이다.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현대 의료기기 관련 문항 비중이 늘어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현상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기초원리, 교육과정 및 전문성을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한다.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을 단지 양적으로만 비교하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의과대학과 비교하여 교육학점이 결코 작지 않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서양의학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해 한의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sup>24)</sup>.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오판독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25)</sup>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을 이유로 부정적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 현대 진단의료기기는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기기일 뿐 의료정보의 이용여부는 의료인과 환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sup>24)</sup>.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 2013. 12. 26. 선고 결정에 따르면 ‘종래 한의학에서는 집계손가락으로 안구를 살짝 압박하여 그 저항의 정도 등을 가지고 안압을 측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안압측정기의 사용은 이러한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시야계측기나 자동안굴절검사기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問診)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은 정확한 병증(病狀)을 위한 진단행위로 현대 한의학적 망문문절(望聞問切)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사용규제는 상세한 진단을 위한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

해서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위험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 할 수 있는 판독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 주도의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보수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검사결과와 진단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보완 또는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sup>26)27)</sup>에서 한의사들에게만 현대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작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하는데 있어 전문성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 인정을 전제로 한 국회의 뜻과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 보다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진료에 필수적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첨단 과학시대에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범위와 면허행위 대립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는 신 의료기술과 혁신적 의료기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 과제로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적 해석과 의료법 개정에 있어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전문성, 사회적 통념 등 총체적 검토를 통해 규제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와 법조계의 열린 마음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통념 중 국민 여론만을 조사하여

그 외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전국민 3,000명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식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법적 판단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R&D 현황 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론

전국 19세 이상 국민 3,000명 대상으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통념을 알아보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의사의 X-ray 등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에 대해 80.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3%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84.8%에 달하였다. 진료현장에서의 진단의료기기의 활용에 있어서도 55.2%는 한의사에게 현대과학에 기반한 필수적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6.4%는 한의사의 진료에 모든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리적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였을때,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평등권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침해받지 않도록 법제정이 필요하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대한한의학협회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1. Jang, S. K., Jo, G. C. (2019). Issues Concerning Patent Protection of Herb Medication in the Dual Medical System.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14(1), 130-163. <https://doi.org/10.34122/jip.2019.03.14.1.129>
2. Kim, H. N., Kim, K. H. (2016). A Review on the Business Scope of Doctors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Medical Device Use of Oriental Medicine Doctor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4(1), 97-116. <http://dx.doi.org/10.17215/kaml.2016.06.24.1.97>
3. Park, C. (2015).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o the Medical Service Division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16(1), 125-151.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9855>
4. Lee, B. H., Lee., P. S., Park, Y. H., (2011). The Content Analysis of Conflict Cas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19(2), 139-1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17375>
5. Kwon, S. J., Eom, S. K. (2015). The Concept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the Limitations : Focusing on Legislations and Precedent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8(1), 121-1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

- 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97700
6. Kim, J.Y., Park, H. J., Lee, K. H. (2021). From Boundary Work to Infrastructure Work : Hybrid Korean Medicine and the Politics of Medical Device Use Disputes.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21(1), 33-73. <https://doi.org/10.22989/jsts.2021.21.1.002>
  7. President Park Geun-hye stresses the need to boldly abolish key regulations blocking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cited 2016 May 19] Available from: URL: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5441](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5441)
  8. Han, J. H. (2004). 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Common Ideas Experienced by Women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9. Barthes, R. *Mythologies*. Dongmoonsun Publishing. 1997:1-346
  10. Park, Y. L., Kang, Y. S., Baek, K. H., Ra, S. W. (2014). Study on Laws related to the Scope of Both Medical Doctors' Practice in Korea.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8(3), 91-10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4758>
  11. Chung, H. J., Hong, J. W. (2019). Study on Using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al Doctors through Judicial Precedents.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 40(4), 597-611. <https://doi.org/10.22246/jikm.2019.40.4.597>
  12. Kim, H. N., Kim. K. H., (2016). A Review on the Business Scope of Doctors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Focusing on the Problems of Medical Device Use of Oriental Medicine Doctor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4(1), 97-116. <https://doi.org/10.17215/kaml.2016.06.24.1.97>
  13. Kim, H. N., Kim. K. H. (2018).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Work and Utilization of Medical Devic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Ajou Law Review*. 12(2), 42-62. <https://doi.org/10.21589/ajlaw.2018.12.2.42>
  14. Lee, K. M. (2021). Establishment of Judgment Criteria Regarding "Medical Practice Beyond the Scope of License" - Focusing on Oriental Medical Doctor's Use of Medical Devices. 1(57), 447-486. <https://doi.org/10.22825/juris.2021.1.57.012>
  15.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2020). Usag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Report In 2020.
  16. Bahari M. B., Ling, Y.W. (2010). Factors contributing to customer satisfaction with community pharmacies in Malaysia. *Journal of Public Health*, 18(1), 35-41.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389-009-0280-7>
  17. Becker F., & Parsons, K.S. (2007). Hospital facilities and the role of evidence-based design *Journal of Facilities management*, 5(4), 263-274.
  18. 65.7% of the Korean People's Support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cited 2015 May 2] Available from: URL: [http://m.bokuennews.com/m/m\\_article.html?no=105043](http://m.bokuennews.com/m/m_article.html?no=105043)
  19. Restrictions on the Use of Medical Devices at Korean Medicine Clinics... Patients 'Troubled' due to Double Burden [cited 2018 February 7] Available from: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192103?sid=102>

20. 84.8% of the Korean People's 'Agree' for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cited 2022 May 26] Available from: URL: <http://www.whosaeng.com/136338>
21. Shin, K. C. (2016). A Socially Accepted Idea and Justification in Labor Law : Focusing o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Labor Law Research Society. (40), 235-27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61964>
22. Park, Y. S. (2019). The New Understanding of Korean Medicine Practice in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and Duty of Care.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3(2), 117-27. <https://doi.org/10.25153/spkom.2019.23.2.010>
23.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20). On the Use of Modern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A Study on Ways to Improve Social Conventional Wisdom.
24. SK, Y. H., Cho, B. H. (2013).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Korean Oriental Doctor's Use of Diagnostic Imaging Devices.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22(2), 225-2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4281>
25. Beak, G . H., Jang, Y. H. (2014). A Study of Court Precedents about Concept and Nested Conditions of the West and East Medical Treatmen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2(1), 123-14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5202>
26. Domestic medical AI technology embroidered by KIMES... From 'Video Reading' to 'Medical Education Metaverse' [cited 2022 Mach 12] Available from: URL: <https://m.medigatenews.com/news/2335597320>
27. AI has Greatly Improved the Accuracy of Medical Diagnosis [cited 2022 February 18] Available from: URL: <https://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2/02/17/0022>

## ORCID

Juchul Kim	<a href="https://orcid.org/0000-0002-7210-1527">https://orcid.org/0000-0002-7210-1527</a>
Jungtae Leem	<a href="https://orcid.org/0000-0003-3300-5556">https://orcid.org/0000-0003-3300-5556</a>
Byoungcheun Hwang	<a href="https://orcid.org/0000-0002-4329-4649">https://orcid.org/0000-0002-4329-4649</a>
Manki Hwang	<a href="https://orcid.org/0000-0001-9866-876X">https://orcid.org/0000-0001-9866-876X</a>
Seungmin Kathy Lee	<a href="https://orcid.org/0000-0002-4478-3081">https://orcid.org/0000-0002-4478-3081</a>
EunHee Yi	<a href="https://orcid.org/0000-0002-9221-5345">https://orcid.org/0000-0002-9221-5345</a>